美, '김정은 돈줄죄기' 가속화

행정부 이어 의회서도 '대북 강경드라이브'

남북대화-비핵화 놓고 한·미간 기류 미묘

새해들어 미국 의회는 물론 오바마 행정부조차도 대북 제제 수위를 높이는 초강경 정책을 내놓는 등 대북 압박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에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온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대화보다는 압박'을 공식으로 천명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재원을 줄임으로써 북한이 '비핵화의 장(場)'으로 나오게 만들겠다는 게 김 대표 발언의 요지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의미 있는' 북미 대화를 제안했으나 북한이 이를 일축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특히 "북한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포기할 것이란 환상이 없다"고 언급하며 한·미·일·중·러 5자간 '제재공조'를 꺼내들었다.

이달 중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대표' 회동을 갖는데 이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5자 제재공조를 재가동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북한과 가까워지는 러시아에는 "비핵화 공조만큼은 전례없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대북 금융제재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훨씬 더 '체감적'으로 대북 제재 구상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초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13687호)를 토대로 북한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고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존 제재 대상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북한 정부와 당 소속 개인과 단체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대외거래를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FTB)에 대한 제재를 모범적 제재사례로 거론했다.

미국이 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FTB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곧바로 일본과 호주도 제재를 가했고 이어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일부 은행들이 FTB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는 '나비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을 겨냥한 제재 사례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을 지목했다. 북한 정권의 핵심인물들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제재가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다.

의회의 대북 기류는 훨씬 더 강경하다. 특히 공화당의 매파가 상·하원의 군사·외교위원회를 장악하면서 대북 강경드라이브가 더욱 강하게 걸리고 있다.

지난 113대 회기에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조이는데 초점을 둔 대북 제재 금융강화법안(HR 1771)을 발의했던 애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회기에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입법 예비 수순에 해당한다.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대북 강경모드는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추진 흐름과 미묘한 기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외교가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다. /연합뉴스

佛 테러 규탄·희생자 애도 13일(현지시간) 저녁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옆 파리 광장에 모인 수천명의 시민들이 프랑스 파리 테러를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증오 없는 포용과 관용 사회 건설을 다짐하고 있다. 독일 이슬람중앙위원회와 터키공동체가 반(反)테러와 연대 의지를 내세워 공동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우리가 모두 독일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독일 사회의 통합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경찰 "한국인의 절제·질서 의식 본받자"

교황 방문 앞두고 시민들에 당부

필리핀 경찰 당국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목 방문을 앞두고 한국인들의 절제와 질서의식을 본받자며 시민에게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14일 ABS-CBN방송에 따르면 윌번 메이어 필리핀 경찰 대변인은 지난해 8월 교황의 한국 방문 당시 한국인들이 지정구역을 준수, 상당한 절제를 발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필리핀 국민도 한국인들의 모범을 본받아 필리핀의 절제와 질서를 국제사회에 과시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필리핀 현지에서 집전하는 미사 등에는 수백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운집할 전망이어서 극심한 혼잡이 우려된다. /연합뉴스

광주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차조합원 추가모집공고

※ 본 조합원 추가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조합원 가입희망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조합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등

구 분	내 용	비 고
조합의 명칭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조합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72-3번지	
조합 대표자	조합장 정 경 주	
설립인가번호	2014-건축과-주택조합설립인가-1	
인가 신청일	2014년 09월 17일	추가모집 기준일
인가승인일자	2014년 12월 02일	
승인 조합원	총 533명 (84.68㎡ 353세대/ 63.79㎡ A 68세대/ 63.46㎡ B 112세대)	1차조합원
2차모집예정조합원	총 390명 (84.68㎡ 244세대/ 63.79㎡ A 130세대/ 63.46㎡ B 16세대)	2차모집(예정)
조합사업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50번지 일원	건설대지
사업지 대지면적	45,552.00㎡	

※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현재 건축심의 등 사업승인을 위한 업무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승인 등의 과정상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동의하에 본 조합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본 조합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우리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으로써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14. 09. 17)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이하 1채이하)에 한하며,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 함의 소유자(참조 : 거주제한이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는 별도 거주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가신청일 이후 타지역으로 거주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유지에 무방합니다)

■ 세대주 판정기준

- 세대주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자격요건임. 다만, 조합원이 근무 · 질병치료 · 유학 ·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인가권자인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38조제2항)

■ 세대원이란?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분가한 차남 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이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됩니다.

■ 주택소유에 대한 판정기준

- 지역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인 주택소유 여부에 대하여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2에 의한 국토해양부의 주택전산망 검색에 의하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주택소유기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 2 및 제3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8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써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합원 추가모집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수제한 없이 추가모집을 하여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추가모집 승인 북구청 건축과-1699호(2015. 01. 13)에 따라 추가모집을 실시합니다.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50번지 일원(대지면적 : 45,552.000㎡)

■ 공급예정규모 및 내역 : 지하 1층~지상 26층 아파트 11개동 총 923세대(1차조합원 모집 533세대 완료, 2차조합원 모집 3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개요

사업명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750번지 일원	
지역 및 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 도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구 분	면적	비고
대지면적	45,552.000 ㎡	
규 모	아파트 : 지하 1층, 지상 26층(11개동) 부대복리시설 : 지하 1층, 지상 1층(6개동) 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2개동)	
건축면적	6,730.7404 ㎡	
연면적	128,534.2333 ㎡	
용적률산정용면적	97,829.0702 ㎡	
건폐율	14.78 %	법정 : 60.00 % 이상
용적률	214.76 %	법정 : 220.00 % 이상
세대수	923세대(지하 1층, 지상 26층) 84.68㎡형 597세대 / 63.79㎡ A형 163세대 / 63.46㎡ B형 128세대	
주차대수	아파트 : 1,158대 -지상 : 306대 -지하 : 852대 근린생활시설 : 11대 -지상 : 0대 -지하 : 11대 지상주차비율 : 26.18 % / 지하주차비율 : 73.82 % 장애인주차비율 : 3.08 % 세대별 주차비율 : 1.25대(1,158대 ÷ 923세대)	법정대수 : 931대 아파트 : 923세대 × 1대 = 923대 근린생활시설 : 1,071.4907 ÷ 134 = 8대
조경면적	법정 15,032.16 ㎡ 이상(45,552.00 ㎡ × 33 % = 15,032.16 ㎡) 계획 15,085.35 ㎡ 계획 공동주택심의규정	33.00 % 이상 33.12 % 계획

- 조감도

■ 조합주택건설예정 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 조합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 84.68㎡ 597세대/ 63.79㎡A 198세대/ 63.46㎡B 128세대 총 923세대 건설 예정
- 건설예정 기간 : 2015년 5월 착공 ~ 2017년 11월 준공(약 31개월)

■ 2차조합원 추가모집기간 및 모집세대

- 추가모집 승인 후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전까지(예상기간 15년 01월 ~ 15년 05월까지)
- 추가모집 390세대

구 분	1차조합원	추가모집조합원	총 세대	비 고
84.68 ㎡	353세대	244세대	597세대	
63.79 ㎡ A	68세대	130세대	198세대	
63.46 ㎡ B	112세대	16세대	128세대	
합 계	533세대	390세대	923세대	

■ 공급예정대상 및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구분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세대전용	발코니전용	소계	벽체공용	계단실 및 LB	소계	
조합주택	84.68	597	84.4408	0.2407	84.6815	7.6557	21.7665	29.4222	114.1037
	63.79 A	198	63.7967	0.0000	63.7967	6.0687	19.9512	26.0199	89.8166
	63.46 B	128	62.0019	1.4625	63.4644	6.4661	19.8473	26.3134	89.7778

※ 주의 : 위 주택형별 면적은 사업승인 및 인허가 과정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	분양가	계약금 1차 5% 계약시	계약금 2차 5% 10일내	계약금 3차 10% 40일내	중도금(60%) 1회 10% 미정	2회 10% 미정	3회 10% 미정	4회 10% 미정	5회 10% 미정	6회 10% 미정	잔금 입주시 20%
84.68㎡	1층	16	246,000	12,300	12,300	24,600	24,600	24,600	24,600	24,600	24,600	24,600	49,200
	2,3층	32	256,000	12,800	12,8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25,600	51,200
	기준층	182	265,500	13,275	13,275	26,550	26,550	26,550	26,550	26,550	26,550	26,550	53,100
	최상층	14	278,200	13,910	13,910	27,820	27,820	27,820	27,820	27,820	27,820	27,820	55,640
63.79㎡A	1	0	190,000	9,500	9,5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38,000
	2,3층	13	199,000	9,950	9,950	19,900	19,900	19,900	19,900	19,900	19,900	19,900	39,800
	기준층	113	206,000	10,300	10,300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41,200
	최상층	4	217,000	10,850	10,85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43,400
63.46㎡B	1	1	190,000	9,500	9,5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38,000
	2,3층	4	199,000	9,950	9,950	19,900	19,900	19,900	19,900	19,900	19,900	19,900	39,800
	기준층	9	206,000	10,300	10,300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20,600	41,200
	최상층	2	217,000	10,850	10,85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21,700	43,400

※ 계약금 납부일자는 1차계약금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10일이내(2차계약금), 40일(3차계약금) 이내 임.
※ 주의 : 위 주택형별 공급금액 중 조합원 추가납부 예정사항은 조합아파트 보존등기비, 발코니확장비, 중도금이자 등이며 취득세, 상하수도원인자분담금, 광역교통부담금, 종합토지세, 대체조림비, 농비전용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조합사업비로 대체될 계획임)
※ 위 분양금 납부금액 및 방법은 원활한 조합사업을 위해 분양가 총액 내에서 계약금의 납부비율 및 금액 등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 조합가입계약금 납부계좌

납부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301-0146-6703-41	아시아신탁(주)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미포함)은 아래 표의 해당금액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납부일정 및 금액은 착공 후 통보예정)

구분	주택형(㎡) 84.68㎡	63.79㎡ A	63.46㎡ B	비고
계약자부담	10,000,000	8,000,000	8,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계획승인신청 예정일 · 착공 예정일 및 입주 예정일

- 사업계획승인신청 예정일 : 2015년 03월(예정)-(주)디인건축사사무소 소장 이범국
- 조합 아파트 착공 예정일 : 2015년 05월(예정)-현대아산(주) 착공예정
- 조합 아파트 입주 예정일 : 2017년 12월(예정)-현대아산(주) 준공예정

■ 가입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신청일시, 장소안내

- 가입신청 자격 : 우리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 2014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함. 단, 2014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요건 중 전용주거면적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변경 됨 (주택법시행령 제38조)
단, 주택소유여부와 과거당첨이력 등 조합원 자격일 기준은 우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임.

규약 제8조 [조합원의 자격]

1-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의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2-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 조합가입 신청일시 : 2015년 01월 14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 조합가입 신청장소 : 당사 견본주택(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조합가입 시 구비서류(상기 세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월이내 발행분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계약금(광주광역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또는 무통장입금증 • 인감도장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무주택확인서 및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2통, 초본 2통 - 가족관계증명서 2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2통(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2통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 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의 소명자료 제출	• 국토교통부 주택소유사실여부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재산세과세 증명원 및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본인의 책임으로 조합가입 소명자료 제출 • 금융결제원의 전산검색으로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여부 또한 조합가입자 본인의 책임으로 소명자료 제출 - 청약관련 미계약, 전매, 미당첨 등 관련 소명자료 제출
이중당첨자,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조합가입서 제10조(해약 및 손해배상) 1항[조합(이하 "갑")은 가입계약자(이하 "을" 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 은 "갑" 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1항 4호[조합원 가입신청 후 구비서류의 결여, 기재사항 불비, 허위사실 기재, 날인결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와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1항 5호[주택법 등 관계법령 또는 동림동 지역주택조합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때]를 준용하여 위의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는 우리조합에서 우편 등의 통보 후 소명의 기간은 통상 7일 이내로 하여 본인의 책임과 자력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조합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를 준용하여 본 조합가입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자는 조합가입계약서 및 부속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조합탈퇴서 및 환불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제출한 환불계좌로 기납부된 계약금은 우리규약 제12조, 조합가입계약서 제10조 및 임원이사회의 의결로 환불처리토록 한다.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조합가입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시행자 :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 시공자 : 현대아산(주)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72-3 (TEL. 062-373-0111)

※ 본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2차조합원 추가모집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84㎡ / 63㎡ A · B형 총 923세대
※상기 세대수는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문의 062 373-0111

동림동 운암산 빌앤더스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 현대아산 · 아시아신탁